

 <p><b>거창군</b> Geochang County</p> <p>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p>	<h1 style="font-size: 4em; margin: 0;">공 보</h1> <p style="font-size: 1.5em; margin: 0;">제920호 2023. 7. 12.(수)</p>	
---	---	---

선 결	기관의 장

## 고 시

- 거창군 고시 제2023-94호 도로구간 변경 고시 ..... 2
- 거창군 고시 제2023-95호 도로명주소 고시 ..... 4

## 공 고

- 거창군 공고 제2023-1111호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5
- 거창군 공고 제2023-1120호 북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17
- 거창군 공고 제2023-1129호 분묘개장공고 1차 ..... 20
- 거창군 공고 제2023-1134호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중로1-16호선, 1공구)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공고 ..... 22

<b>회 략</b>									
------------	--	--	--	--	--	--	--	--	--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도로구간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도로명 등의 고시 및 고지)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도로구간 변경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12일

## 거창군수

1. 고시일자 : 2023. 7. 12.
2. 고시방법 : 거창군보, 거창군 홈페이지, 게시판
3. 고시내용 :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참조  
※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 및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
4. 참고사항
  - 도로구간의 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일 2023년 7월 12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구간 변경 조서

일련 번호	행정 구역	구 분	도로명	도로구간		중양선	건물 번호	사물 주소	도로구간 변경 사유	비 고
				시작지점	끝지점					
1	신원면	변경 전	내탐길	신원면 대현리 405-1 (내탐길 104-1)	신원면 대현리 산10 (내탐길 104-168)	도면참조	2	없음	종속구간 생성(연장)	직권
		변경 후	내탐길	신원면 대현리 405-1 (내탐길 104-1)	신원면 대현리 산14 (내탐길 104-248)	도면참조				

주소정보기본도(위성사진 중첩)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7. 12.

거창군수

###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금곡1길 280 등 8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 (변경·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4)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7월 5일

###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2. 개정이유

- 도시미관 및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표시에 관한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
-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시 불필요한 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7)

- 1)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횡수별 차등부과

나.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시 불필요한 위원회의 심의 생략(안 제26조)

- 1)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규제부담 경감 조례 개선권고사항 반영
- 2) 수수료 감면조건이 명확한 경우에는 불필요한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생략하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

다.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안 제5조의3제3항 · 제8조제2항제5호 · 제13조제5항)

- 1) 설치·관리에 관하여 → 설치·관리에 ( ‘관하여’ 를 생략)
- 2) 운영 등에 관하여 → 운영 등에 ( ‘관하여’ 를 생략)
- 3) 심의기준 등에 관하여 → 심의기준 등에 ( ‘관하여’ 를 생략)

4. 예고기간 : 2023. 7. 6.(목) ~ 7. 26.(수)

##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7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도시건축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소: (우 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다. 전화: 055-940-3582, 팩스: 055-940-3579, 이메일: sykim6919@korea.kr

라.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자치법규명 :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입법예고내용	의 건	비 고

##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3항 중 “설치·관리에 관하여”를 “설치·관리에”로 한다.

제8조제2항제5호 중 “운영 등에 관하여”를 “운영 등에”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심의 기준 등에 관하여”를 “심의 기준 등에”로 한다.

제26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제3항(종전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 등의 전수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이 일제 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목적을 위해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같은 표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②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7 제1호 사목 및 아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5조의3(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b>                      ①~② (생략)                      ③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u>설치·관리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p> <p><b>제8조(주민협약회의의 운영)</b>                      ① (생략)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약회의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약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주민협약회의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약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진행한다.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주민협약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그 밖에 주민협약회의의 <u>운영 등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약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p> <p><b>제13조(옥외광고 심의위원회의의 운영)</b>                      ①~④ (생략)                      ⑤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의의 심의 대상·방법·절차, 안전의 제출방법, <u>심의기준 등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의 위원장이 정한다.</p>	<p><b>제5조의3(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b>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u>설치·관리에</u>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p> <p><b>제8조(주민협약회의의 운영)</b>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약회의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약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주민협약회의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약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진행한다.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주민협약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그 밖에 주민협약회의의 <u>운영 등에</u>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약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p> <p><b>제13조(옥외광고 심의위원회의의 운영)</b>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의의 심의 대상·방법·절차, 안전의 제출방법, <u>심의기준 등에</u>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의 위원장이 정한다.</p>

**제26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별표 4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별표 5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 별표 6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현금·수입증지 또는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허가나 등록 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군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군수가 일제 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표시하거나

**제26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별표 4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별표 5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 별표 6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현금·수입증지 또는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허가나 등록 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군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삭 제>**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
2.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u>설치하는 광고물등</u>	<u>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u>
<신 설>	3. <u>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군수가 일제 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u>
<신 설>	4. <u>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u>

[별표 7]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 1. 일반기준

- 가. 제2호가목에서 법 제3조 또는 법 제3조의2를 위반한 경우로서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 나. 제2호가목1)라)·제2호가목2)라)의 소수점 계산에서  $0.0m^2$  초과  $0.5m^2$  이하는  $0.5m^2$ 로  $0.5m^2$  초과  $1.0m^2$  미만은  $1.0m^2$ 로 계산한다.
- 다. 제2호 가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장당 또는 개당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하여 부과하며, 여러장 또는 여러개의 불법 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한 경우에는 합계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
- 라.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를 말한다)은 포함한다.
- 마.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산정한다.
- 바.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 사.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 2)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 3)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 아. 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표시 또는 설치했을 때와 같은 목 2)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하도록 표시 또는 설치했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 자. 제2호가목·라목·마목을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차. 사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사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카.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 2. 개별기준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법 제3조, 제3조의2 위반)	법 제20조 제1항제1호			
1) 입간판 가) 면적 1㎡ 이하 나) 면적 1㎡ 초과 2㎡ 이하 다) 면적 2㎡ 초과 3㎡ 이하 라) 면적 3㎡ 초과하는 면적 0.5㎡당		14만원 49만원 80만원 80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	18만원 64만원 105만원 105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23만원 84만원 135만원 135만원+ 13만원을 더한 금액
2) 현수막 가) 면적 3㎡ 이하 나) 면적 3㎡ 초과 5㎡ 이하 다) 면적 5㎡ 초과 10㎡ 이하 라) 면적 10㎡ 초과하는 면적 1㎡당		14만원 32만원 80만원 8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18만원 42만원 105만원 105만원+ 20만원을 더한 금액	23만원 55만원 135만원 135만원+ 25만원을 더한 금액
3) 벽보 가) 10장 이하 나) 10장 초과 20장 이하 다) 20장 초과 30장 이하 라) 30장 초과		장당 20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40천원 장당 50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40천원 장당 50천원 장당 60천원	장당 45천원 장당 55천원 장당 65천원 장당 80천원
4) 전단 가) 1장 이상 10장 이하 나) 11장 이상 20장 이하 다) 21장 이상		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10천원 장당 22천원 장당 32천원	장당 13천원 장당 28천원 장당 42천원
나.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1의3			

<p>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p> <p>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p> <p>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p>		<p>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p> <p>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p> <p>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p>		
<p>다.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p> <p>1) 30일 이상 90일 미만</p> <p>2) 90일 이상 180일 미만</p> <p>3) 180일 이상 1년 미만</p> <p>4) 1년 이상</p>	<p>법 제20조 제1항제2호</p>	<p>67만원</p> <p>117만원</p> <p>217만원</p> <p>400만원</p>		
<p>라.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p>	<p>법 제20조 제1항제5호</p>	<p>80만원</p>	<p>200만원</p>	<p>500만원</p>
<p>마.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p>	<p>법 제20조 제2항</p>	<p>30만원</p>	<p>50만원</p>	<p>100만원</p>

## 관계법령 발취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1의2.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표시한 자

1의3. 제10조의4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4. 삭제

5. 제16조를 위반하여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②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거창군 공고 제2023 - 1120호

## 북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북상면치안센터 훼손·난동·방화 등 시설관리 및 안전 도모를 위하여 CCTV(영상감시장치)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의견제출)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7일

### 거 창 군 수

1. 행정예고명 : 북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구.북상면사무소) CCTV 설치
2. 시 행 청 : 경상남도 거창군
3. 설치대상지 및 규모

연번	설 치 위 치	설치대수	비고
1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1391-11번지 일원 북상면 치안센터 내·외부	5대	내부 3대 외부 2대

4. 공고기간 : 2023. 7. 7. ~ 2023. 7. 27.(21일간)
5. 의견제출 : 2023. 7. 7. ~ 2023. 7. 27.(21일간)
6. 공고방법 : 거창군청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게시
7.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거창군청 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우 편 : (우)50147

▶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합대로 3322,  
거창군청 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농촌개발담당)

▶ 전 화 : 055)940-8272

▶ 팩 스 : 055)940-8229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우편으로 의견제출시 기한 내 도달 기준임(공고기간 내 도달)

사.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 행정 예고 의견 제출서

1. 행정예고 내용	북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구.북상면사무소) CCTV 설치		
2. 당사자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의견 제출인 :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거창군수** 귀하

비 고	<p>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p> <p>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p> <p>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p>
--------	---

## 분묘개장공고(1차)

「거창 지원, 지청 이전부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18조, 제19조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1차) 해당되는 분묘의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수량

소 재 지	수 량	비 고
-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5-62, 1345-39, 1345-54, 1345-51, 1354-28, 1345-52, 1345-55, 1345-61, 1345-40, 1354-25, 1354-22, 산103-1, 1343-2, 1345-56, 1345-3, 1297-15, 1343-13, 1323-59, 산104-1, 1336-9, 산104-12, 1343-7, 산104-13, 1343-9, 1336-8, 1343, 1343-8, 1342-1, 1354-27, 1354-1, 1345-14, 1345-13, 1345-57, 1345-43, 1345-49, 1345-44, 1354-26, 1354-23, 1354-24, 1345-45, 1345-58, 1345-22, 1345-23, 1345-59, 1354-17, 1354-21, 1345-48, 1345-47, 1345-50, 1345-60, 1345-26, 1345-24, 1354-29  -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410-15, 412-15, 410-18, 410-10, 412-17, 410-16, 410-14, 753-1, 410-9, 410-17, 410-4, 412-4. 410-19, 410-8, 410-22, 412-11, 412-16, 산21-10, 산21-9, 산21-11, 412-14, 산25-10, 산25-11, 703-10, 702-7, 702-8	15기	-

2. 개장사유 : 거창 지원,지청 이전부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내 편입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하여 개장 및 이장 처리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률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
  4. 안치장소 : 거창공설 공원묘지(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산170번지)
  5. 안치기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년
  6. 안치방법 : 화장 후 납골당 안치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8. 신고 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신고 및 연락처 : 경상남도 거창군 도시건축과(055-940-3593)
- ※ 개장공고 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위 공고로 같음합니다.

2023년 7월 12일

거 창 군 수

거창군 공고 제2023 - 1134호

## 도시 계획 시설(교통시설:중로1-16호선, 1공구) 실시 계획 인가를 위한 공고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중로1-16호선 1공구)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3. 7. 12.

### 거 창 군 수

1. 사업시행 개요

종류	명 칭	위 치		시 행 규 모					시 행 구 간	최 초 결정일	사업기간
		면	리	구분	번호	연장 (m)	폭 (m)	면 적 (㎡)			
도시 계획 시설	도시계획도로 (중로2-13호선) 1공구	거창	상림리 가지리	중로	1-16	1,720.0	20.0	51,987	거창읍 상림리 749-4 ~ 거창읍 가지리 456-11	경고-465호 ('92.12.24)	2021. 12. ~ 2024. 12.

- 2. 사업 시행자 : 거창군수,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 3. 사업 설계도 : 기재 생략(도시건축과 비치)
- 4. 열람 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5일간
-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중로 1-16호선 1공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m <sup>2</sup> )	편입 면적 (m <sup>2</sup>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 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85,768	51,987	-	-	-	-	-
1	거창읍 상림리	749-4	도	536	4		국(국토교통부)			
2	거창읍 상림리	747-29	구	9,573	1,647		국(농림수산부)			
3	거창읍 상림리	664-1	답	847	1		경상남도			
4	거창읍 상림리	680-1	도	422	85		거창군			
5	거창읍 상림리	679-4	도	14	10		거창군			
6	거창읍 상림리	680-8	답	278	278		거창군			
7	거창읍 상림리	670-7	도	137	73		거창군			
8	거창읍 상림리	670-5	도	261	44		국(국토교통부)			
9	거창읍 상림리	675	도	514	366		국(국토교통부)			
10	거창읍 상림리	675-1	도	8	1		국(국토교통부)			
11	거창읍 상림리	676	도	132	101		국(국토교통부)			
12	거창읍 상림리	679-10	대	96	54		거창군			
13	거창읍 상림리	679-1	답	268	268		거창군			
14	거창읍 상림리	681-8	답	156	15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7길 29, 103동1405호(대경넥스빌)	오기봉 외 1인			
15	거창읍 상림리	681-12	답	53	5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7길 29, 103동1405호(대경넥스빌)	오기봉 외 1인			
16	거창읍 상림리	711-1	전	35	3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16-8	장재동			
17	거창읍 상림리	712-11	답	2,525	2,214		거창군			
18	거창읍 상림리	712-9	전	306	306		거창군			
19	거창읍 상림리	712-12	답	83	83		거창군			
20	거창읍 상림리	712-2	전	196	191		거창군			
21	거창읍 상림리	747-39	구	3,147	2		국(농림수산부)			
22	거창읍 상림리	712-8	답	528	528		거창군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 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23	거창읍 상림리	713	답	175	32		거창군			
24	거창읍 상림리	712-10	답	875	754		거창군			
25	거창읍 상림리	712-7	답	453	453		거창군			
26	거창읍 상림리	714-3	답	331	331		거창군			
27	거창읍 상림리	714-2	답	421	421		거창군			
28	거창읍 상림리	715-1	답	17	17		거창군			
29	거창읍 상림리	산27-3	임	6,577	6,577		거창군			
30	거창읍 상림리	702-5	전	16	16		거창군			
31	거창읍 상림리	703-2	유	529	529		거창군			
32	거창읍 상림리	703-9	답	211	211		거창군			
33	거창읍 상림리	703-11	답	476	476	충청북도 천원군 오창읍 양청5길 41-6, 401호	임종훈			
34	거창읍 상림리	702-4	답	322	205		거창군			
35	거창읍 상림리	702	답	59	59		거창군			
36	거창읍 상림리	703-5	전	56	56		거창군			
37	거창읍 상림리	산25-1	임	258	258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900	거창유씨참여공 파종중			
38	거창읍 상림리	산25-9	임	1,127	1,127		거창군			
39	거창읍 상림리	703-4	전	107	107		거창군			
40	거창읍 상림리	702-6	전	116	116		거창군			
41	거창읍 상림리	702-9	전	647	56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900	거창유씨참여공 파종중			
42	거창읍 가지리	1354-19	임	101	101		거창군			
43	거창읍 가지리	1345-36	전	574	574		거창군			
44	거창읍 가지리	1345-29	전	231	231		거창군			
45	거창읍 가지리	1345-41	전	2	2		국(법무부)			
46	거창읍 가지리	1354-20	임	5	5		국(법무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 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47	거창읍 가지리	1354-18	임	62	62		거창군			
48	거창읍 가지리	1354-12	임	191	191		거창군			
49	거창읍 가지리	1345-42	전	10	10		국(법무부)			
50	거창읍 가지리	1345-37	전	918	918		거창군			
51	거창읍 가지리	1345-38	전	463	463		거창군			
52	거창읍 가지리	1345-21	전	20	20		거창군			
53	거창읍 가지리	1296-10	답	95	95		거창군			
54	거창읍 가지리	1345-27	전	111	111		거창군			
55	거창읍 가지리	1345-39	전	245	118		거창군			
56	거창읍 가지리	1296-12	답	78	78		거창군			
57	거창읍 가지리	1296-11	답	184	184		거창군			
58	거창읍 가지리	1354-16	임	735	735		거창군			
59	거창읍 가지리	1296-17	답	28	28		거창군			
60	거창읍 가지리	1296-24	답	125	125		거창군			
61	거창읍 가지리	1345-35	전	2	2		거창군			
62	거창읍 가지리	1297-10	임	1,266	1,266		거창군			
63	거창읍 가지리	366	답	113	113		거창군			
64	거창읍 가지리	1323-18	전	329	329		거창군			
65	거창읍 가지리	1297-5	창	16	16		거창군			
66	거창읍 가지리	1297-6	창	212	212		거창군			
67	거창읍 가지리	1323-16	전	1,693	1,693		거창군			
68	거창읍 가지리	1297-14	임	837	837		거창군			
69	거창읍 가지리	1323-38	전	348	348		거창군			
70	거창읍 가지리	산113-14	임	674	582		거창군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 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71	거창읍 가지리	1323-37	전	246	246		거창군			
72	거창읍 가지리	367-16	답	54	54		거창군			
73	거창읍 가지리	367-17	답	106	106		거창군			
74	거창읍 가지리	산113-16	임	978	886		거창군			
75	거창읍 가지리	1323-36	전	117	117		거창군			
76	거창읍 가지리	367-18	답	300	300		거창군			
77	거창읍 가지리	367-19	답	296	296		거창군			
78	거창읍 가지리	367-20	답	645	645		거창군			
79	거창읍 가지리	368-1	도	70	70		국(농림수산부)			
80	거창읍 가지리	373-6	도	1	1		거창군			
81	거창읍 가지리	산113-8	임	18	18		거창군			
82	거창읍 가지리	373-2	답	44	44		거창군			
83	거창읍 가지리	373-5	창	298	298		거창군			
84	거창읍 가지리	산112	임	111	11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아림로 23, 아진캐슬5층(504호)	한성기업주식회 사			
85	거창읍 가지리	1726-15	구	87	87		국(농림수산부)			
86	거창읍 가지리	산314	구	190	190		국(농림수산부)			
87	거창읍 가지리	314-1	도	18	18		국(기획재정부)			
88	거창읍 가지리	1312-14	전	55	55		거창군			
89	거창읍 가지리	1313-3	전	380	380		거창군			
90	거창읍 가지리	1312-13	전	69	69		거창군			
91	거창읍 가지리	1313-2	전	3	3		거창군			
92	거창읍 가지리	1313-4	전	3	3		거창군			
93	거창읍 가지리	1312-18	전	24	24		거창군			
94	거창읍 가지리	1313-1	전	18	18		거창군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 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95	거창읍 가지리	1312-10	전	236	168		거창군			
96	거창읍 가지리	1312-17	전	10	10		거창군			
97	거창읍 가지리	1293-29	답	630	630		거창군			
98	거창읍 가지리	1293-31	답	462	462		거창군			
99	거창읍 가지리	1293-33	답	688	688		거창군			
100	거창읍 가지리	1293-35	답	624	624		거창군			
101	거창읍 가지리	1293-49	답	744	744		거창군			
102	거창읍 가지리	1293-38	답	464	464		거창군			
103	거창읍 가지리	1726-10	구	203	3		국(농림수산부)			
104	거창읍 가지리	1293-39	답	293	293		거창군			
105	거창읍 가지리	1293-47	답	149	149		거창군			
106	거창읍 가지리	1293-40	답	361	361		거창군			
107	거창읍 가지리	1293-45	답	533	533		거창군			
108	거창읍 가지리	1293-41	답	976	976		거창군			
109	거창읍 가지리	1293-42	답	1,127	1,127		거창군			
110	거창읍 가지리	1293-44	답	17	17		거창군			
111	거창읍 가지리	1293-43	답	28	28		거창군			
112	거창읍 가지리	1319-1	도	229	229		국(농림수산부)			
113	거창읍 가지리	1301-2	답	932	932		거창군			
114	거창읍 가지리	1302-2	답	548	548		거창군			
115	거창읍 가지리	1304-2	답	1,189	1189		거창군			
116	거창읍 가지리	1306-5	답	124	124		거창군			
117	거창읍 가지리	1305-2	답	531	531		거창군			
118	거창읍 가지리	1306-6	답	121	121		거창군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 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119	거창읍 가지리	1307-3	답	733	733		거창군			
120	거창읍 가지리	370-4	답	231	231		거창군			
121	거창읍 가지리	1308-1	답	1,792	1,792		거창군			
122	거창읍 가지리	371-15	도	16	16		거창군			
123	거창읍 가지리	371-16	답	35	35		거창군			
124	거창읍 가지리	371-14	잡	27	27		거창군			
125	거창읍 가지리	1310-2	답	75	75		거창군			
126	거창읍 가지리	1318	도	184	164		국(농림수산부)			
127	거창읍 가지리	1317-2	답	100	100		거창군			
128	거창읍 가지리	1316-2	답	2,160	2,160		거창군			
129	거창읍 가지리	375-4	답	533	533		거창군			
130	거창읍 가지리	1700-9	천	493	247		국(건설부)			
131	거창읍 가지리	1258-11	답	1	1		거창군			
132	거창읍 가지리	1258-9	답	59	24		거창군			
133	거창읍 가지리	1258-12	답	178	178		거창군			
134	거창읍 가지리	407-5	답	892	892		거창군			
135	거창읍 가지리	1717-13	구	144	111		국(농림수산부)			
136	거창읍 가지리	1713-9	도	61	55		국(건설부)			
137	거창읍 가지리	458-7	답	161	161		거창군			
138	거창읍 가지리	459-3	답	34	34		거창군			
139	거창읍 가지리	406-7	답	111	111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상임실길 140-15	양정명			
140	거창읍 가지리	458-5	답	30	30		거창군			
141	거창읍 가지리	459-5	답	11	11		거창군			
142	거창읍 가지리	406-6	답	69	69		거창군			



6.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7. 의견제출 및 열람 : 위 공람 기간 내 다음 항목을 기술한 의견을 거창군수 (참조 : 도시건축과장)에게 서면[우편번호 : 670-870/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103(상림리 64-1번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이나 전화(055-940-3593), FAX(055-940-3579), E-mail : qudwnsaa@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성 명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끝".